

제2부 입소(이용)자에 관한 사항

제7장 일반 사항

제97조 【입소정원】

- ① 본원의 입소정원은 128명으로 한다.
- ② 또한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입소시설 정원운영에 관한 특례 규정에 따라 입소정원의 5% 범위에서 초과 할 수 있다.
- ③ 증축 및 시설 개보수로 인하여 정원이 변경될 경우는 시군구에서 승인한 설치신고필증의 정원으로 한다.

제98조 【모집방법】

시설은 아래에 명시된 방법 및 법령에 의해 공식적으로 인가된 장소와 방법에 의하여 시설을 공개하고 입소자를 모집하며 그 외의 여하한 방법으로도 시설 입소자를 모집하지 아니한다.

- ① 노인장기요양 보험 공개매체 또는 해당 지자체의 공개매체
- ② 대중언론매체(신문사, 방송사)를 통한 방법
- ③ 시설의 홈페이지나 카페 등 인터넷을 통한 방법
- ④ 기타 시설의 이용안내 리플릿 및 홍보지에 의한 방법

제99조 【입·퇴소 및 입소(이용)자격】

- ① 입·퇴소의 관할: 모든 어르신의 시설 입·퇴소는 시설의 사무국장이 관장한다.
- ② 입소(이용)자격: 노인의료복지시설의 입소자격은 장기요양 등급 1등급~5등급 어르신 중 급여의 종류가 시설급여인 어르신으로 한다.
- ③ 전향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시설은 입소(이용)예정자의 감염병에 관해 법정 전염병 검사를 의뢰하여 검사결과 감염병을 갖고 있을 경우 전염을 이유로 입소(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제100조 【입소(이용) 시 구비서류】

어르신의 효사랑요양원 입소 시 구비서류는 다음과 같이 한다.

- ① 일반 입소자
 1. 입소(이용)신청서
 2. 노인장기요양 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계획서
 3. 가족관계증명서

4. 주민등록 등본
5. 건강진단서 -법정전염병 명기
6. 의사 소견서
7. 약처방전
8. 통상관례에 따른 필요물품
- ②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대상자 (이하 “국민기초” 라 함)
 1. 관할관청의 입소결정문
 2. 이하 위 1항의 일반입소자와 같다.

제101조 【입소(이용)절차】

- ① 일반 입소자
 1. 입소(이용) 당사자 및 보호자 1차 입소(이용) 상담.
 2. 사무국에서 서류 심사 후 2차 방문 상담.
 3. 입소의뢰인이용신청 및 상담
- ② 국민기초 대상자
 1. 입소(이용)상담 및 면담
 2. 해당관청에 입소신청서 접수
 3. 입소결정문 확인
 4. 해당가정에 통보
 5. 입소(이용)계약

제102조 【입소(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① 입소 계약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포함하도록 한다.
 1. 계약기간 : 입소일부터 장기요양인정서 만료일까지로 한다(단, 장기요양인정서 갱신 후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2. 계약목적 : 노인성질환 등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시설급여서비스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기타 부담액) :
 - 1) 요양급여비용 :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에 따름.
 - 2) 비급여 비용 : 식사재료비(간식비), 상급침실료, 이·미용비, 병원진료비 등.
 4. 계약자(이용자, 제공자, 보호자)의 의무
 - 1) ‘갑’ (이용자)의 의무
 - 월 이용료 납부
 - 시설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에 협조

-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 이행

2) ‘을’ (제공자)의 의무

- ‘갑’의 건강관리 협조

- ‘갑’의 신변이상을 ‘병’에게 즉시 연락

- 식사제공 및 생활상담, 조언 및 생활편익 제공

- 건물 및 부대시설의 청결 및 유지관리

- 기타 ‘갑’의 안락한 노후생활에 필요한 협조

3) ‘병’ (보호자)의 의무

- ‘갑’에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 ‘갑’의 월 이용료 등 입소비용 부담

- 인적 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

- ‘갑’의 의무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 선정 및 ‘을’에게 통보

- 기타 시설생활 규칙이행

5. 계약자(이용자, 제공자, 보호자)의 권리

1) ‘갑’과 “병”의 권리

- “갑”의 입소와 퇴소를 신청할 권리

- “갑”이 시설에서 쾌적하고 안락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요구할 권리

- “갑”이 신체활동 지원으로 편안한 일상생활을 할 권리

- “갑”이 제공 받은 서비스에 대한 상세 기록지를 요구할 권리

- “갑”의 월 수납비용에 대한 확인 자료를 요구할 권리(현금영수증 등)

2) ‘을’의 권리

- ‘갑’이 시설이 정한 생활 규칙을 이행하도록 요구할 권리

- ‘갑’의 건강상태를 알리고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병”에게 요구할 권

리

- “을”의 권리가 반복적으로 지켜지지 않고 타어르신에게 위해하다고 판

단될 경우 계약해지를 요구할 권리

6. 계약해지 요건

1) ‘갑’의 해지 사유

- ‘갑’과 ‘병’은 자유의사에 따라 자유롭게 퇴소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유선으로 통보할 수 있다.

2) ‘을’의 해지 사유

- 입소대상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 입소대상자가 병원에 1개월 이상 장기입원 하여야 할 경우.

- ‘갑’의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타입소자의 안전과 인권에 심대한 위협이 될 때
- ‘갑’의 이용료를 2회 이상 납부하지 않고 연체하였을 때(단, ‘을’은 ‘갑’에게 서면으로 이용료 납부를 최고하고 ‘갑’ 또는 ‘병’이 최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까지 이용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7. 그 밖의 입소 물품, 면회 및 외박.외출, 시설관리, 건강관리, 시설물배상, 위급시 조치, 임종 및 장례, 식사 및 간식, 개인정보보호 의무, 기록 및 공개, 배상책임, 계약서의 해석 등의 세부사항은 입소계약서를 참조하도록 한다.

제103조 【외출, 외박】

모든 어르신은 보호자의 요청으로 원장의 허락을 받아 외출증 및 외박증을 작성 후 외출, 외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제104조 【입소(이용)자의 지참물】

어르신의 입소(이용) 시 특정물품을 지정하진 않으나 귀중품은 반입하지 않도록 하며 개인 생활에 필요한 용품을 지참을 허용 한다.

제105조 【퇴소】

- ① 보호자와 어르신의 퇴소의사가 있는 경우 퇴소 별지서식 4-1의 퇴소신청서를 받아 퇴소절차를 진행한다.
- ② 국민기초 대상자는 퇴소 전에 관계부서의 협조를 거쳐 원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퇴소자에 대하여 연계기록지를 작성하고 제공토록 한다(사망자 제외)
- ④ ‘을’의 해지 사유로 퇴소할 경우
 - ‘을’에 의한 계약해지 요건이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해지 의사를 별지 제4-1호서식의 퇴소신청서 및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갑’과 ‘병’에게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 ‘갑’의 개인물품이 있을 경우 인수하여야 한다. 단 입소시설은 사유물품을 1년 이내에 인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병’(또는 ‘갑’)에게 통보 후 ‘을’이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갑’ 또는 ‘병’은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제8장 서비스 내용 및 비용

제106조 【서비스의 내용】

- ① 서비스는 신체활동지원, 간호 및 처치, 기능회복훈련, 시설환경관리, 치매관리지원, 응급서비스, 기타(외출 시 동행, 의사소통 도움)등을 제공하며, 세부사항은 노인장기요양법이 정하는 범위로 한다.
- ② 신규 입소(이용)시 급여제공 계획은 입소(이용) 후 공단이 정하는 일까지 급여제공 계획을 세우며, 계획서에 따라 서비스를 제공한다.
- ③ 급여 재계획은 년 1회 이상 급여제공 결과를 평가하고, 년 1회 이상 재급여 제공계획을 세우도록 한다, 만약 어르신의 상태 변화에 따라 급여제공계획을 수시로 변경할 수 있다.
- ④ 제공한 각각의 서비스는 담당자에 의하여 급여제공기록지와 기타 시설에서 정하는 방법(수기,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으로 기록하여 남겨야 한다.
- ⑤ 서비스 제공 내역은 입소(이용)자 혹은 보호자의 요구시, 공단의 요구시 제공 할 수 있다.

제107조 【입소(이용)비용 및 부담방법】

- ① 국민기초 대상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다.
- ② 일반입소(이용)자는 효사랑요양원 입소(이용)계약서에 명시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 ③ 비급여를 제외한 본인부담금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 ④ 비급여(식재료비, 특별급식비, 상급실이용료 등)은 시설 이사회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며, 개인이 원하는 특별서비스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도록 한다.(예, 자부담이 있는 프로그램, 병원진료비 등)
- ⑤ 매월 15일까지 전월 분 비용을 시설명의로 계좌이체 및 카드로 납입한다.

제108조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 ①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급여 비용이 변경된다.
 1.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 보험 대상자의 요양급여 수가 및 요율이 변경되었을 경우
 3.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때
- ② 비급여 비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입소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③ 노인장기요양 등급의 변경과 관계법령에 의한 금액 변경이 있는 경우 시설은 이 사실을 입소자(보호자)에게 통보하고 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장 입소(이용)자 보호관리

제109조 【특별보호서비스 기준과 비용】

특별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서비스 기준은 다음의 각 호와 같다.

① 입소(이용)어르신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 시설이용어르신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여 어쩔 수 없는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어르신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 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4. 4인 침실을 이용하는 도중에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기거 어르신에게 피해가 예상될 경우 2인실 침실사용을 본인 또는 가족을 통해 권고할 수 있으며, 이때 발생하는 차액은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이실 할 경우 가족에게 사유내용을 설명하고 상급침실 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② 집중관찰 및 전문 의료 활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상태변화를 위한 집중관찰과 집중의료처치를 위하여 별도의 공간이나 특별침실 및 상급침실로 옮겨 전문 의료서비스(산소공급, 잦은 식선 등)를 제공할 수 있다.

2. 호스피스 케어와 관련하여 격리가 필요한 경우 별도의 공간 또는 1인용 상급침실로 이동하여 편안한 환경 및 호스피스 케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3. 특별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상급침실로 이동할 경우 사전 본인이나 가족에게 이실에 대한 사유를 설명하고 상급 침실이용료 지급에 대한 동의를 얻는다.

4. 기타 개별적인 집중케어를 위한 특별의료소모품에 관해서는 본인이나 가족

이 부담한다.

③ 특별 침실을 이용 할 경우 특별침실 사용규칙을 따르도록 한다.

제110조 【의료서비스 처리 절차】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간호(조무)사의 활동사항

1. 간호(조무)사는 매일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건강관리기록부를 작성하여 보관한다.

2.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따라 복용약물, 체중, 혈압, 체온, 혈당 등 입소자의 건강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기록하여 방문의사가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평가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3. 간호(조무)사는 어르신의 건강관리를 위해 의사의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4. 간호(조무)사는 어르신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상황에 따라 협약의료기관의 의사와상담을 실시하여 조치사항을 수행하도록 한다.

② 협약 의료기관의 진료에 관한 사항

1. 협약 의료기관의 의사는 월2회 이상 방문하여 어르신의 건강상태를 확인한다.

2. 의사의 건강상태 점검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직접적인 의료행위 및 처방전 발급 등)를 취한다.

3. 협약의료기관의 의사는 어르신의 건강상태에 관해 상시적으로 의료상담을 실시하며 필요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협약의료기관의 의사가 요양원을 방문하여 진료 후 처방에 따른 본인부담 의료비는 장기요양이용료 외에 본인 또는 가족이 부담한다.

③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1. 어르신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 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2.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가.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나.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다. 병원진료에 필요한 어르신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 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3.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가.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며, 응급상황 대응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나.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한다.

4.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가.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나. 입소어르신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④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 판단될 경우 시설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시설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수 있다.

제111조 【사망자에 대한 조치사항】

① 시설은 시설 어르신의 사망한 경우 그 의식을 경건한 장례절차에 따라 행하여야 한다.

1. 장례사유 발생 시 시설의 조치

1) 장례사유 발생시 사망자 처리에 대하여 시설장은 관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 사망자가 발생했을 경우 시설은 보호자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3) 장례절차는 어르신의 유지와 보호자 뜻에 따라 결정한다. 다만, 무연고자인 경우는 시설의 결정에 따라 적법한 절차로 실시하며, 어르신의 유지를 우선으로 한다. 보호자들의 별도의 장례를 희망하는 경우는 보호자에게 모든 절차를 이 전하도록 하며, 시설은 그 외 가능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4) 어르신 사망의 직접 원인이 직원의 현저한 과실이나 고의적인 사실로 확인되어지면 시설장은 해당 직원을 인사위원회를 통해 징계해야 하며, 필요에 따라 형사고발 조치해야 한다.

② 장례장소는 보호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장소를 결정하되, 무연고자는 시설내에 지정된 장소 또는 장례식장(영안실)에서 시설 주관 하에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장지 및 시신의 처리는 어르신의 유지 또는 보호자의 뜻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화장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이 소재한 행정구역내의 국공립 납골당에 안치하거나 유택동산에 산골하는 방법으로 처리하되, 어떠한 경우에도 시설 내에 사망자의 유골 보관은 금한다.

④ 장례비용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어르신이 사망하였을 경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제시한 비용으로 충당하되, 추가비용이 발생할 경우에는 보호자가 부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시설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이외에는 보호자가 장례비용 일체를 부담하여야 한다.

⑤ 유류금품 처리

1. 어르신의 사망 후 유류금품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의사표시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우선 장례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 잔여금품은 직계혈족 등 유족의 의사에 따라 처리한다.

2. 직계 혈족 등 상속인의 존부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외 잔여금품은 민법에 따라 처리한다.(민법 제1053조)

⑥ 보고 및 퇴소

1. 시설은 어르신 사망 후 행정기관에 사망 1개월 이내에 제반 관련 서식에 의거, 사망사실을 보고하여 퇴소처리 하여야 한다.

제112조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

시설은 입소(이용)인과 그 보호자에게 시설물 사용상의 주의사항(낙상주의 지역, 출입금지 구역, 기타 시설물 사용요령)을 사전에 충분히 주지시켜 시설 내에서 사용상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한다.

① 입소(이용)인은 시설과 합의하여 정한 침실을 사용하며 식당, 욕실, 휴게실, 물리치료실 등 공용서비스시설은 시설의 방침에 따라 다른 이용자와 같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입소(이용)인은 시설종사자 이외의 제3자를 입소인의 거실 내에 거주시키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시설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위의 경우 간병이나 면회 등 부득이한 경우 1일 이내에 한하며 동거하는 제3자도 시설이 정한 운영방침에 따라야 한다.

제113조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

시설은 신뢰할 수 있는 기관에 관계법령에 명시된 보험을 가입하여 만약의 경우에

일어날 수 있는 배상책임에 대비 하여야 한다.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갑”은 “을”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시설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입소(이용)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해 입소(이용)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제114조 【서비스 제공자의 면책범위】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을”은 “갑”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① 시설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② 입소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입소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④ 입소자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제115조 【수급자 교육/훈련 및 기능검사】

① 입소자(이용자)에게 노인학대예방 및 대응교육, 낙상예방 교육, 욕창예방 교육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어르신들의 알 권리를 충족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입소자(이용자)에게 재난대피훈련을 반기별 2회 이상 실시하여 안전한 요양원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입소자(이용자)에게 낙상위험도 욕창위험도 인지기능검사 등을 실시하여 올바른 케어를 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실시한다.

④ 위 전항의 당년도 일정은 전년도 12월에 계획을 세워 실시하도록 한다.

제116조 【수급자 사생활보호 및 인권보호】

①시설은 입소자(이용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급자 사생활보호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 사생활침해

1)비밀침해로 타인의 편지, 문서, 도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기록을 기술적 수단을 사용하여 그 내용을 알아냄으로서 성립하는 내용 or 결정권 침해 사생활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정할 수는 없으나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남에게 알려지는 것을 원치 않는 나만의 영역으로서 타인에 의해 외부에 공표되었을 때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침해 내지 인격적인 수모를 느끼게 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사료됨.

2)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이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 할 수 있다.

3)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 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4)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5)노인은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된다. 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 안된다. 또한 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6)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이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7)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급여제공을 하여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8)노인이 의식주, 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과정에서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②시설은 입소자(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노인인권보호 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1.노인인권보호 지침(목적)

1)이 지침은 효사랑에서 생활하는 노인의 기본적 인권을 규정하고, 이를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1)이 지침의 적용범위는 효사랑의 소속 직원과 효사랑을 이용하는 모든 어르신들로 한다.

3.시설 생활노인 권리선언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그리고 후손의 양육과 국가 및 사회의 발전에 기여하여 온 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정한 기본적 권리와 안정된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다. 노인복지시설 생활노인은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다음과 같은 기본적 권리를 가지며 어떠한 이유로도 권리의 침해를 받아서는 안 되며, 국가와 시설은 생활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1)존경과 존엄함 존재로 대우받고, 차별, 착취, 학대, 방임을 받지 않고 생활 있는 권리

2)개인적 욕구에 상응하는 질 높은 수발(care)과 서비스를 요구하고 제공 받을 권리

3)안전하고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4)시설 내·외부 활동에 신체적 구속을 받지 않을 권리

5)개인적 사생활과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6)우편, 전화 등 개인적 통신을 주고받을 권리

7)정치적, 문화적, 종교적 활동에 제약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할 권리

8)개인 소유 재산자가 소유물을 스스로 관리할 권리

9)비난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시설운영과 서비스에 대한 개인적 견해와 불평을 표현하고 이의 해결을 요구할 권리

10)시설 내외부에서 개인적 활동, 단체 및 사회적 관계에 참여할 권리

11)시설 입·퇴소, 일상생활, 서비스 이용, 제반 시설활동 참여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정보에 접근하고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권리

4.시설 생활노인 권리보호를 위한 윤리강령

시설운영자, 종사자, 동료 생활노인, 가족, 지역사회 등 노인복지시설에서의 보호서비스와 관련된 모든 자는 ‘시설 생활노인의 권리 선언’에 포함된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행동해야 한다.

① 존엄한 존재로 대우 받을 권리

- 1)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어떠한 노동행위도 시켜서는 안 된다.
- 2)노인이 시설의 모든 서비스에 자유롭게 접근 또는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 3)생활노인이 시민으로서 또한 노인으로서 갖는 권리를 완전히 행사 할 수 있도록 어떠한 차별, 감금, 방해, 강압 또는 보복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 4)어떠한 이유로도 신체적 학대, 언어 및 심리적 학대, 성적 학대, 재정적 착취 방임 등의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학대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법률과 지침에 따라 피해학대 노인에 대한 보호조치를 신속하게 취해야 한다.
- 5)가족은 면회나 전화 접촉 등을 통하여 노인과 의 유대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존경하며, 시설의 서비스나 운영에 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6)시설은 종사자에게 노인의 권리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야한다.
- 7)종사자는 수발 및 서비스 과정에서 노인의 권익신장을 위한 상담과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하며, 노인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거나, 침해받은 경우 이의 회복과 구제를 위한 적극적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②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

- 1)노인의 삶의 질을 증진시키고, 잔존능력을 유지하고 자립능력을 고양시키기 위한 질 높은 전문적 수발과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한다.
- 2)정기적인 상담을 통해 노인의 개별적 욕구와 선호, 기능 상태를 고려하여 개별화된 서비스와 수발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한다.
- 3)개인적 선호와 건강 및 기능 상태에 따라 다양한 영양급식을 제공해야한다.
- 4)건강에 해롭다는 의학적 판정 없이 노인이 개인적으로 복용하는 약물을 금지 시켜서는 안 된다.
- 5)시설은 종사자의 능력 개발을 위한 직무훈련과 교육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여 이들의 수발 및 서비스 능력을 제고하여야 한다.
- 6)월별 입소비용 미납 등의 경제적 이유만으로 시설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을 제한해서는 안 되며, 노인의 입소비용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책을 개발하고, 노인의 전원 또는 퇴소 시까지 최선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 7)종사자는 직무수행상의 사고로 인하여 노인에게 위험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서 직무안전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③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 1)시설은 안전하고 깨끗하며 가정과 같은 환경을 제공하여야 한다.
- 2)공간이 허용하는 한 개별적인 수납공간을 제공하여야 한다.
- 3)목욕, 의복 및 침구의 세탁 등 노인의 위생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4)적절하고 편안한 조명과 음향을 제공하여야 한다.

5)편안하고 안전한 실내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④ 신체적 제한을 받지 않을 권리

1)생활노인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히 높거나, 대체할만한 간호나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의 완화를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일시적으로 신체적 제한을 하는 경우 등의 긴급 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적 제한을 해서는 안 된다.

2)긴급하거나 어쩔 수 없는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노인의 심신의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노인 본인이나 가족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3)시설 규정에 위반되거나 또는 의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체적인 제한이나 심리적인 영향을 미치는 약물을 처방해서는 안 된다.

⑤ 사생활 및 비밀 보장에 대한 권리

1)노인의 사생활을 보장하고, 직무수행과정에서 얻은 비밀을 철저히 지켜야 하며, 질병과 치료, 통신, 가족 등과 같은 어르신들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나 기록을 사전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다만 인지능력이 제한된 노인의 경우에는 가족 등 관계자의 동의를 받은 후 노인의 서비스 증진을 위한 전문적 목적에 한하여 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⑥ 통신의 자유에 대한 권리

1)노인은 자유롭게 전화를 이용하고, 우편물을 발송할 수 있어야 하며, 노인의 우편물을 개봉하지 않는 등 개인적 통신의 권리를 최대한 보장 하여야 한다.

⑦ 정치, 문화, 종교적 신념의 자유에 대한 권리

1)노인의 정치적 이념을 존중하고 투표 등의 정치적 권리행사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2)노인의 종교적 신념을 인정하고 특정 종교행사 참여의 강요 등 종교적 신념의 변화를 목적으로 부적절한 영향력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

3)노인의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고 이에 따른 생활양식의 차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⑧ 소유 재산의 자율적 관리에 대한 권리

1)노인 개인 소유의 재산과 소유물은 갖거나 이용할 권리를 최대한 보장하고 이를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다만, 노인이 스스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노인이나 가족 또는 기타 후견인의 특별한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시설에서 사용 또는 처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분기별 또는 수시로 재정사용에 대한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⑨ 불평의 표현과 해결을 요구할 권리

1)노인의 의견이나 불평을 수렴하기 위한 공식적 절차(예: 건의함, 운영위원회 등)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노인이나 가족에 의해 제기된 불평을 즉각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노인이나 가족이 불평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노인에게 차별적 처우나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⑩ 시설 내·외부 활동 참여의 자유에 대한 권리

1)시설내의 자발적 모임이나 다른 노인과 사귀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2)다른 생활노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 시설 내부의 다양한 서비스, 여가, 문화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

3)시설 외부의 건강, 사회, 법률, 또는 다른 서비스 기관의 이용이 원활하도록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며, 필요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여야 한다.

4)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면회나 방문객을 거부해서는 안된다.

5)노인의 자유로운 외출, 외박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⑪ 정보 접근과 자기결정권 행사의 권리

1)노인의 의사에 반하는 전원 또는 퇴소를 하여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전원 또는 퇴소 시 그 사유를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켜야 한다.

2)노인이 요구할 경우 건강상태와 치료·수발, 제반 서비스에 관한 정보와 기록에 대한 접근을 허용하여야 한다.

3)노인이 의식주, 보건의료서비스, 여가활용 등 개인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부분에서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노인의 권리 변화, 건강과 일상생활의 변화, 수발 및 의료적 처치의 변화 등과 관련하여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사전에 노인과 가족에게 통보하고, 의사결정 과정에 노인 또는 가족을 참여시키고 이들의 결정을 존중하여야 한다.

5)생활노인의 권리, 시설 입·퇴소 및 운영과 관련된 시설의 규칙과 규정을 구두 또는 문서로 생활노인과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 또는 공지하여야 한다.

보 칙

제1조 (법령 등의 우선)

관계법령의 개폐로 인하여 본 규칙과 저촉되는 사항이 발생할 경우 그 사항

에 대해서는 상위법령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05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16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6조정원 2.부원장 신설

제97조 제1항 본원의 입소정원은 128명으로 한다.개정

제1조(시행일) ① 본 규정은 2019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